

WTO체제하의 환경과 자유무역간의 조화*

Harmoniz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Trade under the WTO system

이은섭

제1저자: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오병석

공동저자: 협성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양기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김선옥

교신저자: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국내규범과 자유무역의 조화	참고문헌
III. GATT 제20조의 합리적 해석과 적용	Abstract
IV.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조정	

국문초록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이후 환경론자들과 WTO 옹호론자들간의 환경과 자유무역의 촉진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증가해 왔다. WTO의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을 강조해 온 반면 환경론자들은 WTO체제가 환경관련 협정문의 불충분 때문에 환경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취한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여 국내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WTO체제내에서 환경과 무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WTO의 사법적 접근과 함께 환경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와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점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사법적 접근, 사법적 해석과 접근, 무역관련 환경조치, 과학적 접근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105).

I. 서론

WTO의 무역자유화 추구는 초기에는 상품교역과 관련한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점차 다양한 교섭분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서비스무역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무역분야까지 그 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세계무역규범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을 통한 시장의 확대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나 규범을 포함한 사회시스템이나 국내정책의 수립·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하는 WTO체제는 회원국의 국내정책을 규제하여 가는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이해가 침해되지 않고 또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무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외래종의 침입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이 위협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환경파괴문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것은 국제거래의 대상(상품 또는 서비스)이나 거래형태가 환경보전과 보호, 인간의 건강보호 및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이유로 하는 수입제한조치가 WTO 협정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DSB에 제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 논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와 안전 및 건강을 이유로 하는 무역제한조치가 위장된 수입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자유무역의 추구에 역행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가이다.

GATT/WTO가 지향하는 국제거래의 기본은 가능한 한 국가 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산업구조적인 장벽을 감소시켜 시장원리를 기초로 하는 무역확대를 실현하고 나아가 후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효율적으로 생산된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이 자유무역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넓게 사용되게 되면 그것은 생산자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의 이익으로도 된다는 비교우위에 따른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따른 메커니즘은 국내시장의 개방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과는 별도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낳을 수 있다.

환경NGO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보호활동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WTO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토대가 되어 무역과 환경·안전문제가 정치문제로서까지 발전하기도 하였다. 경제의 지속적 발전 도모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있는¹⁾ WTO는 발족당시부터 자유무역과 환경보호를 조정하고 또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무역과

1) WTO, "Trade and Environment in the WTO," Press Brief, 16 Apr., 1997.

환경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²⁾를 설립하기도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하였다.²⁾

식품첨가물이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주로, 위험)에 대한 과학적증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시각도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위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게 되어 GATT 제20조에 예외조항을 두었다.

환경, 식품안전성, 제품안전성의 유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중요한 현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류가 존속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GMO 식품을 비롯하여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식품과 제품은 인체에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또한 사람의 건강에 이롭지 않은 공업제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도 건전한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들 과제에 대응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GATT/WTO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것일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GATT 제20조, SPS협정 및 TBT 협정의 실무적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귀착된다.

본 논문에서는 GATT 제20조 규정을 적용하여 환경 및 건강·안전문제와 자유무역과의 관계를 다루었던 사례를 통하여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을 통한 무역과 환경·안전·건강 간의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³⁾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과학적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요구되는) 자연과학의 연구를 기초로 하는 학제적 연구가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률·정치·사회적 관련규정의 해석과 적용·운용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 Marrakesh Ministerial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14 Apr., 1994.

3) WTO 체제가 출범한 이래 WTO 체제하에서 무역과 환경간의 갈등과 조화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이른바 WTO 체제를 옹호하는 자유무역론자들과 WTO 체제를 비판하는 환경론자들과의 전통적인 다툼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이에 비하여 국내적으로는 비교적 양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가능한 한 조화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논문이 대세였다. 이러한 국내의 대표적인 논문들로는 환경과 무역의 종합적인 연계방안을 다룬 것으로서, WTO 체제하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이은섭·이양기, 한국무역학회(2005)), 무역과 환경의 조화 가능성의 검토(김철수, 한국무역학회(2008)), WTO 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성립요건에 관한 분석(이춘삼, 한국무역학회(2006)), 무역과 환경:GATT/WTO의 논의(이호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5)), WTO의 무역·환경 분야 협상 주요 이슈와 논의 현황(윤장인,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WTO에서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서철원, 대한국제법학회(2002)) 등의 논문이 있으며, 특히 무역과 건강과 관련한 연계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WTO 체제하의 환경 라벨링 제도를 통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이은섭·박은진, 법무부(2007)), 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조항을 활용한 통상관련 환경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이은섭·이주영, 한국환경법학회(2007))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중시하지 않은 환경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이해관계자간의 이해관계의 갈등과 조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국내규범과 자유무역의 조화

환경보호⁴⁾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제한조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WTO에 제소된 사건에서는 국내법의 적용을 통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실시하였다. 예컨대, GATT 시대의 참치/돌고래사건⁵⁾과 WTO시대의 새우/바다거북사건⁶⁾에서는 각각 미국 국내법에 따른 수입제한조치가 이루어졌고, 미국이 취한 조치가 WTO협정에 합법적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되었다. 이 이외에도(예, 가솔린⁷⁾, 석면사건⁸⁾) GATT와 WTO협정 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정당성이 논의된 사건은 모두 국내규범의 적용에 따라 무역제한조치를 실시하였고 그 조치의 정당성여부를 WTO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였던 메커니즘을 감안하면 WTO 규정이 국내규범의 체제와 구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의 필요성기준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WTO협정과 의 정합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관계 속에서 WTO가 실질적으로 국내규범을 수정,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내규제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취한 어떤 조치의 합리성, 타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WTO 규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게 됨으로써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국내규범의 형성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TO에서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무역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환경보호의 수준과 목표를 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원국의 환경보호법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WTO의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있다.⁹⁾

미국가솔린사건에서 WTO 항소기구는 대기공기는 GATT 제20조에 의해서 보호의 대상으로 되는 유한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은 하였으나, 미국 정부가 정한 가솔린의 청정기준의 준수 의무는 외국가솔린에 대한 차별로 GATT 제20조의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미국에게 행정규칙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 후

4) 본 논문에서 취급되는 환경문제는 자연환경보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건강보호 및 동식물의 건강 보호·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5)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30 *I.L.M.* 1594, 1991.(참치/돌고래 I).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33 *I.L.M.* 839, 1994.(참치/돌고래 II).

6)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R.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AB.

7)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R.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8) Report of the Panel,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R.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AB/R.

9)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WT/DS2/R), 29 Jan., 1996, Para 7.1.

미국은 WTO의 판결에 따라 EPA규칙¹⁰⁾을 개정한 후 오염도가 높은 외국가솔린의 수입을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내석유회사는 연합하여 EPA규칙의 개정은 환경보호이외의 요소(WTO 판결 등)를 고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CAA(Clean Air Act: 대기정화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국내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DC순회공소법원에서는 EPA규칙의 개정은 부분적으로는 국제조약상의 분쟁해결절차의 결과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능한 한 국제협정에 일치하는 법해석이 요구된다는 *The Schooner Charming Betsy* 판결¹¹⁾을 인용하여 EPA의 법률해석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¹²⁾

환경보호법에 관한 GATT/WTO의 판결은 문제 된 회원국의 행정조치나 환경보호법을 폐지 또는 개정시키거나 새로운 환경정책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여 왔다.

새우/바다거북사건에서도 바다거북보호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운용의 측면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한 항소기구의 판결에 따라 미국은 船別수입허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별 인증을 얻기 위한 절차의 투명화 등을 고려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이행조치를 취하는¹³⁾ 등 미국법원도 WTO협정을 존중하여 왔다.¹⁴⁾ 그 외에도 TEDs의 기술이전을 행하였으며 바다거북의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조약의 교섭을 많은 국가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결국 WTO 체제하에서 제품의 안전, 품질 및 환경보호 등에 관한 국내기준은 국내제품과 외국제품 간에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WTO의 무차별원칙과 조화를 이룬 국내기준은 외국제품과 국내제품에 대해서 동일기준을 적용하게 하고, 외국제품에 대한 시장참여기회를 국내제품과 평등하게 제공하게 함으로써 자유무역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품에 대한 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보호주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가 국가마다 행해지게 되면 세계적으로 모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자유무역의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WTO에서는 내국민대우원칙¹⁵⁾의 적용을 통하여 이러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운용하

10) 가솔린정제기준규칙(EPA규칙)은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대기정화법(CAA)에 따라 1994년에 제정한 규범이다.

11) *Murry v. The Schooner Charming Betsy*, 6 U.S.(2 Cranch) 64(1804).

12) *George E. Warren Corp. v. EPA*, 159 F.3d 616(D.C. Cir. 1998).

13) 미국법(멸종위기종법) 자체는 WTO 협정에 위반되는 아니고 다만 이 법률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만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항소기구의 판결에 대해 미국은 미국법과 WTO협정과 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하였다. "U.S. to Balance Trade, Environment Concerns in Shrimp-Turtle Ruling," *Inside U.S. Trade*, 4 Dec., 1998.

14) 미국법원에서는 국제법상의 판단을 평가하면서 판결을 내릴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Renata Benedini, "Reconciling Environment and Trade - Complying with the WTO Shrimp-Turtle Decision," *Transnational Publishers*, 2001, pp.439-440

15) 내국민대우원칙은 회원국에게 국내규제를 만들 수 있는 주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실무적으로 그 원칙의 운용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적용만을 문제로 하고 있다. Kalypso Nicolaidis and Joel P. Trachtman, "GATS 2000: New Directions in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 From Political Regulation to Managed Recognition in GATS," *Brookings*

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국내기준의 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기준과 자유무역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차별적이지 않은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가며 또한 차별적인 기준을 어떠한 해석과 실무적인 적용을 통해서 차별적이지 않게 운용해야 할 것인가는 그러한 규제의 현실적인 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내기준과 WTO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WTO 회원국은 환경보호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WTO 협정의 목적을 존중하면서 WTO상의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¹⁶⁾

Ⅲ. GATT 제20조의 적용을 통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1. 2단계의 심사절차

환경과 안전(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무역제한조치를 실시할 경우 그것은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또는 제11조(수량제한 금지)의 규정에 위반할 수 있다. WTO에서는 원칙적으로 환경과 안전보호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등 국내외적으로 어떤 공익과 관련되는 사항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GATT 규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GATT 제20조에 일반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법에 따른 환경과 안전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가 DSB에 제소된 경우에는 패널과 항소기구는 우선 무역제한조치가 제20조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고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회원국이 취한 조치의 적용방법이 제20조의 두문(chapeau)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2단계 심사를 거쳐 WTO협정의 규정에 대한 저촉 여부를 판단한다.¹⁷⁾

GATT 제20조에는 10개의 조항에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Institution Press, 2000, pp.241-282

16)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WT/DS58/R), 15 May. 1998, Para.9.1(Concluding Remarks).

17) 새우/바다거북사건에서 항소기구는 회원국이 취한 규제조치가 두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한 패널의 심사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심사순서는 바꿀 수 없다는 해석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그 이후의 사건에도 인용되어 이 사건은 중요한 선례로서 형성되어 있다.

환경과 안전문제에 관한 것은 (b)항과 (g)항이다. 제20조 (b)항에는 사람,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제20조 (g)항에서는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으로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GATT 제20조 (b)항은 환경과 안전을 위한 대부분의 모든 수입제한에 해당된다. 제20조 (b)항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기계적으로 무역자유화 의무의 예외로 인정하게 되면 예외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여지를 줄 수 있어 예외규정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20조 두문요건까지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제한조치는 예외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즉, 동일조건하에 있는 회원국에 대해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적인 취급(arbitrary and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된 방법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두문에 명시된 내용은 제20조에 규정된 예외사항의 남용방지규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20조에 규정된 각호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변할 수 있다.¹⁸⁾

2. 예외조항의 해석과 적용

1) 제20조 (b)항

제20조 (b)항의 적용에 의해 무역제한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채택한 조치가 사람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necessary)조치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관련된 사건에서 특히 문제로 되어 온 것은 “필요성”의 요구조건에 대한 해석이었다.

WTO 출범 후 최초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된 미국 가솔린사건에서¹⁹⁾ “필요성 기준”은 미국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정제업자와 외국정제업자에게 서로 다른(국내업자에게는 개별기준, 외국 업자에게는 통일기준) 가솔린 품질기준을 적용한 조치는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미국이 취한 무역제한적인 조치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라 하더라도 미국이 채용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서 GATT 규정에 대한 위반의 정

18)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19)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는 1990년 미국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의해 “품질기준”에 관한 규칙(가솔린규칙)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비오염지역에서는 환경오염도가 90년보다 높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판매해 온 품질을 기준으로 한 가솔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90년대에 미국에서 가솔린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던 정제업자, 혼합업자,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통일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문제로 된 사건이다.

도가 보다 낮은 다른 선택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가솔린규칙에 의해서 1990년부터 오염이 개선되었다는 증거 또한 없었다는 이유로 패널은 미국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b)항의 필요성의 기준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석면사건에서는 어떤 조치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GATT 규정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GATT 규정과의 불일치의 정도가 보다 적은 다른 대체조치가 없다는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패널은 요구하였다. 캐나다는 “관리된 사용”(controlled use)(즉, 석면이 시멘트 내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하는 등)이 대체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관리된 사용”은 석면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에 유효하다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이에 반하는 증거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석면의 수입 금지 조치는 “필요성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WTO사건에서 채용한 “필요성 기준”은 GATT 시대부터 채용해온 법 해석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WTO 이전부터 필요성 기준의 충족 여부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보다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판단하였다. 예컨대, 타이·담배사건²⁰⁾에서 태국은 미국산 연초에는 건강에 유해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담배연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대해 패널은 담배는 건강에 유해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GATT 제 20조 b호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ATT는 자유무역보다도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문제된 연초의 유해성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금지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예를 들면 라벨링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 수입금지는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참치/돌고래사건²¹⁾에서도 미국이 수입 금지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대체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성 기준의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돌고래보호를 위한 국내법에 의해서 참치어선이 돌고래도 함께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돌고래를 함께 포획하는 국가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패널은 돌고래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GATT 제20조 (b)항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후에 미국은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참치나 참치제품에 대해 일방적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는 대신에 이들 국가와의 국제교섭 등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돌고래의 포획을 방지하는

20) Report of the Panel, Thailand Restrictions on Importation of and Internal Taxes on Cigarettes, BISD 37S/200., 7 Nov., 1990.

21)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 Tuna, circulated on 3 Sep., 1991, not adopted, BISD 39S/155;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circulated on 15 Jun., 1994, not adopted, DS29/R.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체조치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였다.²²⁾

태국담배사건에서의 라벨링, 참치/돌고래사건에서의 타국과의 국제교섭 등과 같은 대체조치는 이들 조치가 대체로서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문제로서 결국은 패널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남는다. 캐나다가 대체조치로서 주장한 석면의 “관리된 사용”은 그 대체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문제로서 패널이 판단하였고 이러한 패널의 판단을 항소기구는 지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해석 경향을 검토해보면 “필요성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판례법이 형성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

2) 제20조 (g)항

유한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조치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한 (g)항에서는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치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relating to) 것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조치는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실시되어야 한다.

항소기구에서는 미국가솔린사건에서 (g)항의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존에 “관한 조치”이므로 “필요한 조치”보다는 완화된 의미이며 천연자원의 보존을 제1의 목적으로 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회원국이 취한 조치와 천연자원의 보존(공기정화) 간에 실질적인 관계(substantial relationship)가 있으면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항소기구는 이러한 해석에 따라 미국 가솔린 품질에 관한 규칙은 대기오염의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시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g)항에 따라 정당화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²³⁾

“조치”와 “보존에 관한” 관계에 대해 새우/바다거북사건의 항소기구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긴밀하고 또한 진정한 현실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과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다거북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관계를 “긴밀 또는 진정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바꾸어 해석했으며 두 관계의 유무를 검토할 때에 “조치의 일반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22) GATT 제20조 d항에 있는 필요성기준에 관해서는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BISD 36S/345, 7 Nov., 1989. 참조.

23) 패널보고에서는 수입품을 국내제품과 구별하는 조치는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첫 번째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조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미국가솔린사건에서 항소기구는 패널이 판단하지 않았던 세 번째 심사항목인 “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항소기구는 동 요건은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을 공평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취급할 것까지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품질기준규칙은 국산가솔린과 수입가솔린 모두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새우/바다거북사건에서도 제20조 (g)항의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 요건적용에 있어 가솔린사건의 선례에 따라 수입새우에 부과되고 있는 제한은 미국선박에 의해서 포획되고 있는 새우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이 취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공평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기구는 (g)항을 해석함에 있어 환경정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정당화가 인정되기 쉬운 과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이 사건 이후의 미국의 새우 및 새우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사건에도 채용되었다.

이와 같이 제20조 (b)항과 (g)항의 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의 해석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b)항의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체조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필요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을 적용하면서 (g)항의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존에 “관한 조치”이므로 “필요한 조치”보다는 완화된 의미이며 천연자원의 보존을 제 1의 목적으로 하면 충분한 것으로 완화된 해석을 하고 있다.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적용되는 해석기준을 비교하면 후자의 요건을 전자보다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전자를 위한 무역제한 조치보다도 후자를 위한 무역제한조치가 보다 넓게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²⁴⁾

3) 제20조의 頭文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가 두문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GATT 시대에는 없었다. 그것은 GATT 시대에는 제20조 (b)항 또는 (g)항에 의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할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문요건에 대한 해석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항소기구가 미국조치의 (g)항 적합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미국가솔린사건이다.

가솔린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제20조 두문요건의 역할을 제20조에 열거된 일반적 예외사항

24) Nogueira Gustavo, “The First WTO Appellate body Review”, *Journal of World Trade* Vol. 30, 1996 pp.9-10; Rex J. Zedalis, “The Environment and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44, 1997, pp.186-208.

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이를 위해 “자의적(arbitrary) 차별”,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은(unjustifiable) 차별” 또는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의 세 가지 소극적인 요건을 열거하고 이들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역제한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항소기구는 미국은 독자적으로 국산가솔린과 수입 가솔린에 대해 개별기준 또는 통일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정제업자에게는 국내업자의 비용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외국정제업자에게는 이러한 배려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어 품질기준규칙의 적용은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은 차별”이면서 또한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미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국내정제업자와 외국정제업자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은 규제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행정상의 제약)은 설득력이 없었다.

새우/바다거북사건에서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제20조 두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환경보호수단에 수입국들이 따르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조치는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에 위반되고, 동일조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상대로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을 하였기 때문에 GATT 제20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품수입의 허가요건으로서 특정한 환경보호수단을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WTO에서 허용하게 되면 다각적 교섭을 지향하는 WTO협정의 역할이 제한되고, 다른 수입국도 자국의 독자적인 제한을 수출국에 부과하려고 함으로써 각각 대립되는 보호수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어 결국 다각적무역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WTO 설립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보면, 수출국이 보호정책을 포함한 일정의 정책 채용을 시장접근의 조건으로 하는 조치는 GATT 및 WTO 설립협정에서 무역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다각적 무역구조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제20조 두문의 요건 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출국에게 바다거북체거장치(TEDs) 사용에 관한 포괄적 요구가 적용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은 차별을 구성하고 제20조 두문 상 허용되는 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의 항소를 받은 항소기구는 환경보호정책은 수입국이 상당한 정도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여 패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기구는 두문요건의 취지와 목적은 예외의 남용방지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를 원용하는 수입국의 권리와 수출국의 실체적 권리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을 유지하여 수입

국과 수출국의 이익을 균형시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제20조에 열거된 각 조항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항소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i) 미국법(어업법)²⁵⁾ 자체는 수출국에 보호방법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가이드라인에서는 수출국이 미국과 동일한 보호방법(어류포획방법)을 채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통일된 바다거북 보호방법을 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외국에 대해서는 자국과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며, (ii) 미국과 동일한 보호방법에 의해 포획된 새우라도 미국정부가 지정한 해역 밖에서 포획된 새우의 수입을 미국은 금지하였으며, (iii) 미국은 새우 수출국과 바다거북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수입 금지를 실시하였다.

항소기구는 두문의 요건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을 추가적으로 해석지침으로서 참조하였으며 이 사건은 WTO협정의 해석에 있어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지침으로 사용한 예로서 주목받았다.²⁶⁾

항소기구의 판결에 따라 미국과 원고국은 99년 12월 6일까지 시정조치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후, 미국은 외국의 바다거북 보호방식과 미국방식의 동등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폭적인 유연성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바다거북을 보호하지 않은 새우어획법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의 방법을 개선하고, 미국이 채용한 방법 이외의 바다거북보호방법도 허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수입제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가와의 외교교섭을 실시하여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기술지원도 실시하고 인도양 여러 국가와 바다거북보호를 위한 협정교섭의 노력을 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였다.

항소기구가 승인한 패널판단은 다수국간 어프로치가 바람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가 GATT 제20조에 의해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i) 보호에 관한 국제합의의 존재, (ii) 다수국간 조약교섭의 성실한 이행 등이었고, 수입제한은 다만 “잠정적 보전조치”로 인정되었다.²⁷⁾

25) 미국은 멸종될 위기에 처한 생물로서 바다거북을 보호하고 있어 바다거북을 같이 포획하는 포획방법에 의해 포획된 새우의 수입을 금지하였다(미국 어업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조치는 미국영해에서 새우를 잡을 때에 사용이 의무로 되어 있는 바다거북체거장치(TEDs)의 사용을 모든 새우어선에 강제하지 않은 수출국으로부터의 새우 및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수입제한에 대해 1996년 10월 8일에 인도, 파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미국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DSB에 제소하였다.

26) Sanford E. Gaines, "The WTO's Reading of the GATT Article XX Chapeau : A Disguised Restriction on Environmental Measur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2, 2001, pp.739-862; Robert Howse, "The Appellate Body Rulings in the Shrimp/Turtle Case : A New Regal Baseline for the Trade and Environment Debate,"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27, 2002, p.491.

27) Jason E. Kearns and Steve Charnovitz, "Adjudicating Compliance in the WTO : A Review of DSU Article 21.5,"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5, 2002, p.331.; Kotera Akira, "On the Legal Character of Retaliation in the World

무역제한조치가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석면사건에서 이루어졌다.

이 문제에 관해서 패널은 미국 가솔린사건의 항소기구보고서를 원용하여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법령(Decree)은 공표되었으며 또한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프랑스정부가 취한 조치는 GATT 제20조 (b)항의 예외요건에 해당하고 나아가서 GATT 제20조 두문에 규정하고 있는 소극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GATT 제20조의 예외사유로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법령은 국산 석면 및 모든 수입석면에 적용되고,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표되어 있으므로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캐나다는 항소기구에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패널은 “위장된 무역제한”의 의미는 “제한”보다는 “위장”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였고 어떤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법률이나 법령 등의 형태로 공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위장된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어떤 규범이 공표되어 있는지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조치가 위장된 무역제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그칠 우려가 있다. 어떤 조치가 공표되어 있어 표면적으로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것이 위장된 무역제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조치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제규범이 표면적으로 공표되어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그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 내지 역할을 분석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IV. 환경보호와 이해관계자간의 조정

1. 미국가솔린사건

미국가솔린사건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된 가솔린정제기준에 관해 국내업자(완화된 개별기준 설정)와 외국업자(고정적인 통일기준 설정)에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패널 보고서²⁸⁾에서는 EPA규칙은 수입 가솔린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GATT 제3조 4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제20조 (b)항 및 (g)항의 적용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기

Trade Organization System,” Leiden : Martinus Nijhoff Vol. 2, 2002, p.918.

28) Report of the Panel, *supra* note 6.

구보고서²⁹⁾에서는 정제기준은 제20조 (g)항에 해당하지만 그 적용이 제20조 두문요건인 부당한 차별 및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결론적으로 미국이 취한 조치의 정당성을 부인하면서 EPA규칙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EPA규칙의 제정과정을 검토해보면 일부 석유회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한 정도로 숨겨져 있었다.³⁰⁾ 미국 국내기업에게 인정한 기준에 대한 계산방법을 외국기업에게 인정하게 되면 가솔린 정제기준에 대한 완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³¹⁾ 제정단계에서부터 미국의 환경법 적용을 우회적으로 피한다고 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비난도 있었다.³²⁾ 미국 국내기업에게 인정한 기준의 계산방법을 외국기업에게 인정한다고 해도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었으며³³⁾ 일부의 미국석유회사에게는 기준의 차별에 의해 수입 가솔린을 배제하게 되는 이익도 있었다. 물론 EPA규칙 그 자체는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제정되었으나 미국이 취한 조치는 특정기업을 보호하는 선택이 농후한 조치이고 반드시 환경보호의 이익이 크다고 평가 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은 WTO 설립이후 최초의 판정이고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협정 제정 시에 미국행 정부는 WTO판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이미 WTO에 사건을 제소해 놓거나 제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³⁴⁾ WTO 판정을 무시하는 나쁜 선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가솔린판정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압박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코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저변에 작용하고 있었다.³⁵⁾

2. 새우/바다거북사건

미국이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거북제거장치(turtle excluder devices : TEDs)를 부착

29)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note 6.

30) Jeffrey L. Dunoff, "Rethinking International Trade,"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9, 1998, pp.367-369.

31) Aubry D. Smith, "Executive-Branch Rule making and Dispute Settlement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 Proposal to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Michigan Law Review* Vol. 94, 1996, p.1268.

32) Alexander Stewart Choinski, "Anatomy of a Controversy: The Balance of Political Forces behind Implementation of the WTO's Gasoline Decisio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33, 2002, p.583; Gustavom Grunbaum & Richard H. Steinberg, "The Greening of Trade Law-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al Issues: Dispute Settlement and U.S. Environmental Law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pp.61-63.

33) Draft TEPAC Letter on Gasoline Panel, *Inside U.S. Trade* Vol. 14, 7 Jun., 1996.

34) WTO 발족 이후 미국은 WTO 회원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였으며 WTO 체제의 이익을 폭넓게 향유하여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5) "U.S. Learning toward Changing Gas Rules to Comply with WTO Panel," *Inside U.S. Trade*, June 7, 1996; Maury D. Shenk,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0, 1996, p.674.

하지 않고 새우를 포획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새우에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및 태국이 DSU에 협의요청을 함으로써 쟁점화 된 사건이다. 미국은 미국영해에서 새우를 포획할 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TEDs의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의무화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새우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패널보고서는 GATT 제11조 1항에 위반되고 GATT 제20조의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의 항소를 받은 항소기구에서는 미국의 수입 금지조치는 제20조 (g)항의 “유한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및 “국내제한과 관련하여 실시”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조치의 적용이 제20조 두문의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은 차별” 및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법률인 “멸종위기종법”은 국내에서 TEDs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 국내새우업자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NGO의 강한 요청과 소송제기 위협³⁶⁾ 등을 우려하여 미국해양어업국(NMFS)은 TEDs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새우업자가 외국 업자(특히 멕시코)에게 TEDs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새우 잡이를 하는 업자가 많은 멕시코만 출신의 의원의 지지를 얻어 위의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³⁷⁾ 이 법률의 제정과정을 보면 실제로 환경NGO는 이 법률의 제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며³⁸⁾ 순수한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³⁹⁾ 외국업자와 공평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⁴⁰⁾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의 집행단계에서 환경NGO는 국무성의 지리적적용범위의 한정 및 1996년 가이드라인에 의한 선별(shipment-by-shipment)수입허가방식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들의 청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별(country-by-country)인증방식에 의해서 미국과 동일한 엄격한 수준으로 바다거북보호정책을 다른 국가에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항소기구는 국별 인증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선별수입허가방식을 채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⁴¹⁾ 제20조 (g)항의 “유한천연자원”의 해석에 있어서 WTO설립협정전문의 환경보호에 관

36) 소송제기를 피력한 NGO는 The Center for Marine Conservation,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다. Peter Chessick, "Reconciling Environment and Trade, Transnational Publishers: Explaining U.S. Policy on Shrimp-Turtle: An International Business Diplomacy Analysi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512.

37) Id., pp.511-515.

38) Id., p.516.

39) Achim Körber, "The Political Economy of Environmental Protectionism," Edward Elgar Pub., 2000, pp.98-103, p.113.

40) 미국법원은 “멸종위기종법”의 제정목적은 “level playing field”확보를 위해 제정하였다고 해석하였다.

Turtle Island Restoration Network v. Evans, 284 F. 3d 1282(Fed. Cir. 2002) pp.1294-1295. (available at <http://openjurist.org/284/f3d/1282/turtle-island-restoration-network-v-1-evans-1-h-b-d-p>).

41) 항소기구보고서 para.165.

한 언급과 많은 환경보호조약에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언급, 워싱턴조약 멸종위기종류 리스트에 바다거북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한 점, 영역외의 생물보호도 제20조 (g)항의 적용 범위로 한 점,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의거한 일방적 조치도 제20조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한 배려가 엿보인다.

이러한 WTO의 판정은 환경보호단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환경보호에 상당한 정도의 배려를 한 결과로 보인다.

3. 소고기호르몬사건

소고기호르몬 사건⁴²⁾은 GATT에서 WTO로의 이행기에 미국과 EU 간에 논쟁되어 WTO협정(특히 SPS협정)의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었다. 이 분쟁은 1988년에 EU가 성장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양육한 미국산 및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해 “사람의 건강(human health)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성장촉진목적으로 호르몬제가 투여된 호르몬소고기(hormone beef)를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여 역내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EU는 1980년대부터 호르몬소고기는 발암성의 인자가 있다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정치적 압력에 의해 6종류의 성장호르몬제를 소에 투여하는 것을 금지시킴과 동시에 호르몬이 투여된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EU지침⁴³⁾의 형태로 국내법화 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여 왔다.

문제 된 6종류의 호르몬(3종류는 천연호르몬, 3종류는 합성호르몬) 중 5종류에 대한 기준을 1995년 CODEX⁴⁴⁾에서 설정하였다. 천연으로 존재하는 3종류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에 해를 미칠 우려는 없으므로 1일 섭취량(ADI) 및 잔류허용량(MDI)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합성호르몬 중 두 종류에 대해서는 ADI, MDI를 설정하였다.

미국정부는 EU의 수입 금지조치는 (i) 위험성평가에 따르고 있지 않은 점에서 SPS협정 제5조 1항에 위반되며, (ii)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제한을 실시하는 점에서 SPS협정 제2조 2항에 위반되고, 적절한 위생수준달성에 필요한 이상의 제한에 해당되고, 차별적이고 위장된 국제무역의 제한이기 때문에 WTO협정(SPS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다.

42)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WT/DS26/AB/R, WT/DS48/AB/R.

43) Council Directive, 81/602/EEC, 88/146/EEC, 88/299/EEC.

44) 1962년 FAO와 WHO의 합동식품규격작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 사건의 패널과 항소기구에서는 해당 EU지령은 SPS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여 EU에 수입금지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EU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9년부터 미국과 캐나다는 EU로부터 수입된 특정 EU제품에 고율(100%)의 제재적인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WTO판정에 따른 보복조치를 발동하였다.

이 사건은 WTO 설립 후에 최초로 보복조치를 승인받은 사례로서 항소기구 판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EU와 미국의 각각 수입 금지조치와 보복조치는 지속됨으로써 EU와 미국 모두는 자유무역을 촉진한다는 WTO의 목적과 정신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⁴⁵⁾

호르몬의 안정성에 대해서 EU는 오랫동안의 위험성평가를 하여 왔고 그 결과로서 새로운 지수⁴⁶⁾를 제정하였다.⁴⁷⁾ EU는 호르몬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조치를 변경하는 기초를 마련한 새로운 지령을 제정함에 따라 WTO권고를 이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미국과 캐나다에 보복조치의 종결을 요청하였으나⁴⁸⁾ 양국은 EU가 WTO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EU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거절에 대해 EU는 패널과 항소기구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보복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GATT 제 1조 1항 및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WTO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정식의 협의요청을 함으로써 호르몬분쟁은 지속되었다.

WTO분쟁해결절차의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시킨 이 사건은 EU가 취한 조치는 사람의 건강(human health)의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주권과 관련된 것으로서⁴⁹⁾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회에서도 존중해야하는⁵⁰⁾ 중요한 사안이다. 가솔린정제기준사건과 같은 대기의 공기정화에 관한 사안도 사람의 건강에 관한 문제와 (간접적으로) 관계되지만 식품의 안전기준은 사람의 건강과 보다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사람의 건강문제

45) Rosemary A. Ford, "The Beef Hormone Dispute and Carousel Sanctions: A Roundabout Way of Forcing Compliance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Decis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7, 3002, pp.562-563.

46) Directive 2003/7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E.U.OJL262/17, 2003.10.14일 발효함.

47) 새로운 지수에서는 하나의 호르몬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이 있는 것으로서 인정하고 영속적인 사용 및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다섯 개 호르몬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사용과 수입을 금지한 상태에서 다시 이들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SPS협정 제5조 7에 따른 잠정조치를 적용).

48) 2003년 11월 7일 DSB 회동에서의 발언이다. WT/DSB/M/157, pp.7-10.

49) Benjamin L. Brimeyer, "Bananas, Beef, and Complianc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In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to Achieve Compliance from Superpower Nations,"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Vol. 10, 2001, pp.154-155; Dale E. McNiel, "The First Case under the WTO's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The European Union's Hormone Ba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9, 1998,, pp.100-101; Werner P. Meng, "The Hormone Conflict between the EEC and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Context of GATT,"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 1990, p.820.

50) Martin Wagner, J., "The WTO's Interpretation of the SPS Agreement Has Undermined the Right of Governments to Establish Appropriate Levels of Protection Against Risk,"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31, 2000; Vern R. Walker, "Keeping the WTO from Becoming the "World Trans-Science Organization": Scientific Uncertainty, Science Policy, and Fact finding in the Growth Hormones Dispute,"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1, 2001.

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이 분쟁을 장기적으로 끌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이외에도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조치의 지속적 유지에 찬성하였고⁵¹⁾ EU내의 각 이해관계자는 일치하여⁵²⁾ EU수준에서의 사용금지 및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도 분쟁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호르몬 소고기 분쟁은 미국과 EU 간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기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해결과정은 양국의 무역이익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의 분쟁을 계기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 예방적 조치로서 제품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WTO협정에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EU와 미국 간에는 제품의 안전성이 불확실한 경우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근거로 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만약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나 무역제한을 할 수 있게 되면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은 사회적 후생(welfare)을 최대로 한다는 대전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안전성여부에 관한 판단은 국제기관(CODEX)의 과학적분석의 결과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미국-캐나다와 안전성의 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science evidence)가 발견될 때까지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EU측의 대립이 계속 이어졌다.

2009년 5월 미국과 EU는 1988년부터 계속하여 진행해온 호르몬 소고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약 20년간에 걸친 분쟁은 일단 종결을 맞게 되었다. 분쟁발생 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분쟁의 원인이 된 6종류의 호르몬제가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EU와 미국은 양해각서가 교환된 시점을 계기로 양국은 대립관계에서 협조관계로 전환하였다.

이 사건의 해결이 오래 끈 이유는 EU(수입국 측)가 안전성여부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금지한 것에 있다. 1998년에 EU의 수입 금지조치는 WTO 위반이라는 WTO판정에도 불구하고 EU는 수입 금지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그 후 미국이 제재관세를 인상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EU는 타협을 하게 되었으며, 강제 라벨링에 의한 특정 미국산(고품질소고기)에만 수입수량할당을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국은 안전성보다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에서 해결의 의

51) Sebastiaan Princen, "EC Compliance with WTO Law: The Interplay of Law and Polici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2004, p.570.

52)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Sebastiaan Princen, *ibid.*, fn.58.

지를 보였다. 이 사건에서도 무역과 환경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V. 결 론

WTO 협정은 그 전문에 다자적 무역체제하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무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에 따른 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전문에 따르면 무역과 환경에 관한 WTO의 기본목표는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호의 양립(균형)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WTO는 무역확대로 인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무역확대보다는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에 서서 환경보호조치를 허용하려는 노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즉 WTO의 판결기구는 무역확대를 통하여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WTO이전보다 환경보호에 많은 배려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문제는 회원국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위장된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WTO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정당성문제를 취급한 WTO협정 이전의 사건과 비교하여 보면 GATT 제20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완화된 해석을 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배려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GATT가 시장원리에 따른 무역자유화를 중요시함에 따라 제20조의 예외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온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WTO 판결기구는 관련규정의 문언해석에 충실하여 협정의 취지나 목적의 범위 내에서 환경보호와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무역제한조치가 협정에 합법적이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환경과 무역 간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제20조 (b)항의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다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대체조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원고국(수출국)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원국의 환경보호정책을 배려하고 있다. 유한천연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g)항의 “관련성”요건

은 조치와 자원보존의 목적 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GATT 시대에 적용되어온 “주목적”(main objective)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예외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검토요건의 명확화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에 의거한 무역제한조치가 WTO 협정 하에서 허용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개별 규정의 해석과 두문의 해석이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회원국에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의적인 차별을 구성하지 않기 위하여는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의 보호조치는 투명하고 유연해야 하며,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지 않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관계국간의 교섭을 통한 다국 간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동일한 조건에 있는 국가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위장된 무역 제한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하여는 회원국에서 채용한 조치는 무역조치로서 사전에 공표되고 관계국가에 통고되어야 하며 또한 보호주의적인 무역으로 위장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와 무역 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화(균형)관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환경보전이나 사람의 건강보호,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 등을 고려하면서도 위장된 보호주의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간의 조정과 더불어 국제협약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Akira Kotera, "On the Legal Character of Retali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Leiden : Martinus Nijhoff*, Vol. 2, 2002.
- Benedini Renata, "Reconciling Environment and Trade-Complying with the WTO Shrimp-Turtle Decision," *Transnational Publishers*, 2001.
- Brimeyer Benjamin L., "Bananas, Beef, and Complianc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In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to Achieve Compliance from Superpower Nations,"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Vol. 10, 2001.
- Chessick Peter, "Reconciling Environment and Trade: Explaining U.S. Policy on Shrimp-Turtle: An International Business Diplomacy Analysi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 Choinski, Alexander Stewart, "Anatomy of a Controversy: The Balance of Political Forces behind Implementation of the WTO's Gasoline Decisio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33, 2002.
- Council Directive, 81/602/EEC, 88/146/EEC, 88/299/EEC.
- Draft TEPAC Letter on Gasoline Panel, Inside U.S. Trade Vol. 14, 7 Jun., 1996.
- Dunoff, Jeffrey L., "Rethinking International Trade,"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9, 1998.
- Ford, Rosemary A, "The Beef Hormone Dispute and Carousel Sanctions: A Roundabout Way of Forcing Compliance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Decis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7, 2002.
- Gaines Sanford E., "The WTO's Reading of the GATT Article XX Chapeau: A Disguised Restriction on Environmental Measur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2, 2001.
- Gene. M. Grossman and Alan. O. Sykes, "A preference for development : the law and economics of GSP," *World Trade Review*, Vol. 41, 2005.
- George E.Warren Corp. v. EPA, 159 F.3d 616(D.C. Cir. 1998).
- Gustavo Nogueira, "The First WTO Appellate body Review," *Journal of World Trade*, Vol. 30, 1996.
- Grunbaum, Gustavo & Steinberg Richard H., "The Greening of Trade Law-International Trade

-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al Issues: Dispute Settlement and U.S. Environmental Law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 Howse Robert, "The Appellate Body Rulings in the Shrimp/Turtle Case: A New Regal Baseline for the Trade and Environment Debate",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27, 2002.
- Jan Neumann and Elisabeth Turk, "Necessity Revisited : Proportionality in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after Korea-Beef, EC-Asbestos and EC-Sardines," *Journal of World Trade*, Vol. 37, 2003.
- Kearns, Jason E. and Charnovitz Steve, "Adjudicating Compliance in the WTO: A Review of DSU Article 21.5,"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5, 2002.
- Körber Achim, "The Political Economy of Environmental Protectionism," *Edward Elgar Pub*, 2000.
- Lin Tsai-Yu, "Exploring Modest Balance for Trade in Tobacco, Anti-Tobacco Smuggling and Health Concerns in Light of the Dominican Republic Cigarettes Case,"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3 2008.
- Mavroids Petros C.,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McNiel, Dale E., "The First Case under the WTO's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The European Union's Hormone Ba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9, 1998.
- Meng Werner P., "The Hormone Conflict between the EEC and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Context of GATT,"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 1990.
- Nicolaidis Kalypso and Trachtman Joel P., "GATS 2000: New Directions in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From Political Regulation to Managed Recognition in GAT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 Pauwelyn Joost, "Notes, Comments and Development, Adding Sweeteners to Softwood Lumb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9, 2006.
- Princen Sebastiaan, "EC Compliance with WTO Law: The Interplay of Law and Polici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2004.
- Raj. Bhala & Gantz, David A., "WTO Review : WTO Case Review 2006",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23, 2007.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AB/R.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WT/DS26/AB/R, WT/DS48/AB/R.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AB, 15 May, 1998.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 Report of the Panel,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R.
- Report of the Panel, Thailand Restrictions on Importation of and Internal Taxes on Cigarettes, BISD 37S/200, 7 Nov., 1990.
-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R.
-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30 I.L.M. 1594, 1991.
-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33 I.L.M. 839, 1994.
-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R, 29 Jan., 1996.
-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BISD 36S/345, 7 Nov., 1989.
- Sauve Pierre and Stern Robert M., "GATS 2000: New Directions in Service trade Liberaliza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 Shenk Maury D.,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0, 1996.
- Smith Aubry D., "Executive-Branch Rule making and Dispute Settlement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 Proposal to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Michigan Law Review*, Vol. 94, 1996.
-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03/7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62/17, 2003.

The ministerial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15 Apr., 1994.

Turtle Island Restoration Network v. Evans, 284 F. 3d 1282, 2002.

Wagner J. Martin, "The WTO's Interpretation of the SPS Agreement Has Undermined the Right of Governments to Establish Appropriate Levels of Protection Against Risk,"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31, 2000.

Walker Vern R., "Keeping the WTO from Becoming the "World Trans-Science Organization": Scientific Uncertainty, Science Policy, and Fact finding in the Growth Hormones Dispute,"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1, 1998.

WTO, "Trade and Environment in the WTO," *Press Brief*, 1997.

Zedalis Rex J., "The Environment and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44, 1997.

ABSTRACT

Harmoniz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Trade under
the WTO system

Eun-sup Lee* · Byung-seok Oh** · Yang-kee Lee*** · Sun-ok Kim****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WTO's member countries' environmental measures have sometimes reflected the interests from their domestic industrial fields under the nam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harmonious linkage between the trade and environments under the WTO mechanism, it is required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reach the consensus for the measures to be impo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the WTO's judicial efforts to make more scientific approach. Such coordination and consensu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would be the efficient way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trade and the environments, together with the WTO's more scientific approach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Key Words :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judicial approach,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scientific approach

* Professor,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Hyupsung University.

*** Instructor,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Changwon National University.